

### 매출 영세율 기타 부가세 신고 문의

**Q** 매출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1. 용역 매출(인보이스) 2. 직수출(필증)이 있는 경우,

1. 용역 매출(인보이스)는 매출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에 기입되며, 영세율 첨부서류에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첨부하고, 수출실적 명세서의 아래 리스트는 하지 않으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2. 이전의 용역매출(인보이스)를 영세율 첨부서류와 인보이스만 제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전 것도 수정신고 진행 해야 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3. 매출 부가세의 영세율 기타(세금계산서발급분X)에 기입되는 항목은 직수출(필증), 용역매출(인보이스)가 있을때, 두항목 모두 영세율 첨부서류와 수출실적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 필증이 있을 경우는 영세율 첨부서류 시 추가로 낼 증빙은 없는건가요? 현재 용역매출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A** 국외에서의 용역매출은 용역공급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하나로 직수출시에 작성하시면 되며, 용역매출시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톨비 대납분 정산

**Q** 차량운전 용역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톨비를 먼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도로 통행료 대납분에 대한 청구를 받아 지급하시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받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 임대차 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1)8/24~9/14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8월로 해야하는지 9월로 해야되는지 여부  
2)9/15~/10/14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9월로 해야하는지 10월로 해야되는지 여부

**A**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지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됩니다.

## 무역조건 변경시 매입처 매출인식에 대한 문의

**Q** 당사의 수출제품 중 무역조건이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매출인식 시점은 기존에 선적기준일 기준으로 계상하고 해당 제품을 당사에 공급하는 거래처(당사기준 매입처)도 선적일 기준으로 매입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사가 무역조건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하면서 DAP(수입자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기준) 조건을 적용하게 될 예정인데, 당사에 납품하는 거래처의 매출액 인식 시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당사 매출액 인식시점으로 계상해도 무방할런지 여부입니다.  
즉, 기존 선적기준 조건과 같이 DAP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A** 매출액 인식은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데, DAP조건인 경우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이 해당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이며 매출인식시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